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2019. 8. 13.



I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1. 관광단지 과세특례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7
- 2.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7
-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8
- 4.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8
- 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9
- 6.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9
- 7.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10
- 8. 기업도시개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11
- 9.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기등 무상귀속 부동산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12
- 10. 산업(기술)단지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제도 보완(지방세특례제한법) 13
- 11.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지방세특례제한법) 14

II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내수 활성화 지원

- 1. 지방농수산물공사등에 대한 감면 연장·재설계(지방세특례제한법) 15
-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16
- 3.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16
- 4.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연장·확대(지방세특례제한법) 17
- 5.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재설계(지방세특례제한법) 18
- 6.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감면 연장·재설계(지방세특례제한법) 19
- 7.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20
- 8. 연안항로 화물운송용 천연가스 선박 감면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21
- 9. 친환경 자동차·버스 감면 확대(지방세특례제한법) 22
- 10.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조정(지방세특례제한법) 23
- 11. 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조정(지방세특례제한법) 24
- 12.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이관(지방세특례제한법) 26
- 13.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유예기간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27

III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 지원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등 조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	28
2. 농어촌개발 및 교환합합용 농지 등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29
3.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제도 보완(지방세특례제한법)	30
4. 농어촌공사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 연장·재설계(지방세특례제한법)	31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32
6.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33
7. 권익증진을 위한 감면 연장·재설계(지방세특례제한법)	34
8.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재설계(지방세특례제한법)	34
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35
10.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35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36
12.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대한 감면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	36
13.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37
14. 학술단체 등에 대한 감면 연장·재설계(지방세특례제한법)	38
15.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39
16.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39
17.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40
18.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감면 연장·재설계(지방세특례제한법)	41
19.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41
20.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42
21.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43
22. 수자원공사 국가등 무상귀속 부동산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44
23.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44
2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연장·재설계(지방세특례제한법)	45
25. 지방공사공단 등에 대한 감면 연장·재설계(지방세특례제한법)	46
26.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47
27. 정당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47
28. 마을회등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48

IV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공정사회 구현

1. 다단계·우회행위 등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방안 마련(지방세기본법) ..	49
2. 고액 지방세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지방세기본법)	49
3.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신청 제도 도입(지방세징수법)	50
4. 전국 합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 등(지방세징수법)	50
5. 체납처분에 따른 질문검사권 범위 확대(지방세징수법)	51
6. 상습 자동차세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지방세법)	51

V 오래된 관행 및 불합리한 과세체계 개편

1. 무신고 및 허위신고시 취득세 과표 개선(지방세법)	52
2.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선(지방세법)	53
3. 신탁재산의 대도시내 취득세 종과 범위 합리화(지방세법)	54
4. 재산분 주민세 탄력세율 범위 개선(지방세법)	55
5.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타당성 검토제도 도입(지방세법)	56
6. 개별 종교단체 등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합산범위 개선(지방세법)	57
7.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대통령령 위임(지방세법)	58
8. 지역자원시설세 목적 및 분류체계 정비(지방세법)	59
9. 지방세 이자상당액 도입(지방세특례제한법)	59

VI 납세편의 및 납세자 권리 제고

1. 경정청구 기한의 일치(지방세기본법)	60
2.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제출요구 금지 등(지방세기본법) ..	60
3. 제3자 신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 및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61
4.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대상 확대(지방세기본법)	61
5.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 확대(지방세기본법)	62
6. 불복청구 결정기간 경과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명확화(지방세기본법) ..	62
7. 영세납세자 지원 위한 관선대리인 도입(지방세기본법)	63
8.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능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추가(지방세기본법) ..	63

9. 자동차를 통한 지방세 납부대상 확대(지방세징수법)	64
10.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압류제 규정 신설(지방세징수법)	64
11. 동력수상레저기구 취득세 납세지 명확화(지방세법)	65
12.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기한 조정 등 (지방세법)	65
13. 균등분 주민세 과세를 위한 가족관계자료 요구근거 명확화(지방세법) ..	66
14.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개선(지방세법)	66
15. 소규모사업자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지방세법)	67
16. 개인지방소득세 무관할 신고 접수제도 도입(지방세법)	67
17. 개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 개선(지방세법)	68
18.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및 신고간소화제도 도입 (지방세법)	69
19. 종합소득 확정신고 안내대상자 통보 등 근거 신설(지방세법)	70
20.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감면(지방세법)	70
21.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부과 前 신고기한 경과분에 대한 사후관리(지방세법)	71

Ⅶ 현행 제도의 보완

1. 세무조사의 정의 등 명확화(지방세기본법)	72
2. 지방세 조합 설립·운영 근거 마련(지방세기본법)	72
3. 지방소비세 사군구세 세입처리 특례 신설(지방세기본법)	73
4. 자동차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명확화(지방세기본법)	73
5. 세무조사 대상범위 현실화(지방세기본법)	74
6. 세무조사 시 장부 등 일시 보관 근거 마련(지방세기본법)	74
7. 부분세무조사의 법적 근거 명확화 등(지방세기본법)	75
8.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지방세기본법)	75
9.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체계 개편(지방세기본법)	76
10.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명칭 변경(지방세기본법)	76
11. 지방세 소송참가 활성화 법적근거 마련(지방세기본법)	77
12. 공매 대행기관으로 '지방세조합' 추가(지방세징수법)	77
13. 부담부증여 규정 명확화(지방세법)	78

14.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조경비용 포함 명확화(지방세법)	78
15. 이륜차 취득세를 체계 근거 신설 및 명확화(지방세법)	79
16.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범위 확대(지방세법)	80
17.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명확화(지방세법)	80
18. 종업원분 주민세 공제 적용기준 명확화(지방세법)	81
19. 법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표준 명확화(지방세법)	82
20.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계산 절차 보완(지방세법)	82
21. 법인지방소득세 일괄경정청구 절차 명확화(지방세법)	83
22. 토지분 재산세 저율 분리과세 세율 적용 대상 명확화(지방세법)	83
23. 『지방세지출 기본원칙』 법제화(지방세특례제한법)	84
24.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범위 명확화(지방세특례제한법)	84
25. 임대주택 감면 추정규정 체계정비(지방세특례제한법)	85
26. 사업재편승인기업 감면대상 명확화(지방세특례제한법)	85
27. 말소차량건설기계 복구등록 감면대상 명확화(지방세특례제한법)	86
28. 감면 제외대상(중과세 부동산) 범위 명확화(지방세특례제한법)	86
29. 무기한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 설정(지방세특례제한법)	87

Ⅷ 국제 개정안 반영

1. 기한 후 신고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지방세기본법)	88
2. 가산세 감면 관련 감면을 조정 및 세분화(지방세기본법)	89
3. 관허사업제한 요건 엄격화(지방세징수법)	90
4. 압류재산 공매 시 매수제한인 범위 확대(지방세징수법)	90
5.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등 규정 보완(지방세법)	91
6.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세율 정비(지방세법)	92
7.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중과 배제 규정 보완(지방세법)	92
8.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비교과세 합리화(지방세법)	93
9. 증축의 취득원가를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 시 가산세 부과(지방세법)	94

1.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지원

1 관광단지 과세특례 연장 [지특법 제54조제1항]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 감면 ○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용 부동산 - 취득세 25% - 조례로 25% 추가 감면 可 ○ 일몰기한: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2.12.31.

□ 개정이유

- 지역개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지속

□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56조 제3항]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업무 부동산 감면 ○ 취득세 50%, 재산세 50% ○ 일몰기한 :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2.12.31.

□ 개정이유

-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 채무 보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감면 연장 [지특법 제58조 제4항]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고유업무 부동산 감면 ○ 취득·재산세 37.5% ○ 일몰기한 :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2.12.31.

□ 개정이유

-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58조의2]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 직접사용 및 중소기업 분양 임대용 부동산 감면 ○ 취득세 35%, 재산세 37.5% ○ 일몰기한 :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2.12.31.
<input type="checkbox"/>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 입주자 직접 사용 부동산 감면(중소기업 한정) ○ 취득세 50%, 재산세 37.5% ○ 일몰기한 :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2.12.31.

□ 개정이유

- 중소벤처기업 활력 제고 필요성을 고려하여 제조업 분야 기업 지원

□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59조 제2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임대용 부동산 감면 ○ 취득세 50%, 재산세 50% ○ 일몰기한: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2.12.31.

개정이유

-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지특법 제60조 제2항 제4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용 신축 건 축물 감면 ○ 취득세 △0.8%p ○ 일몰기한 :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2.12.31.
<input type="checkbox"/>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고유 업무 부동산 감면 ○ 취득세, 재산세 50% ○ 일몰기한 :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2.12.31.

개정이유

-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중소기업 지속 지원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71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물류단지 개발 사업시행자의 물류단지 개발용 부동산 - 취득세 35%, 재산세 35% ○ 물류사업자의 물류사업 직접 사용 부동산 - 취득세 50%, 재산세(5년) 35%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인가 공사 시행용 부동산 - 취득세 25%, 재산세 25% ○ 일몰기한: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물류단지시설 중 대규모점포 감면대상 제외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2.12.31.

개정이유

- 지역물류 산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지속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8 기업도시개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감면 연장(지특법 제75조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감면 ○ (대상)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낙후지역) 창업기업 및 사업시행자 ○ (감면율) 취득세·재산세 50%(조례) ○ 감면요건 - (시행자) 총 개발사업비 1천억이상 - (창업·신설)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감면요건 완화 (시행령 개정) - 투자금액기준 완화 및 고용요건 신설 - (시행자) 총 개발사업비 500억이상 - (창업·신설)	
업종	감면요건	업종	감면요건
연구개발업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연구개발업	투자금액 5억원 이상 상근근로자 10명 이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 조성 운영사업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등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 조성 운영사업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등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상근근로자 15명 이상
제조업,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등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제조업,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등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근근로자 30명 이상
○ 일몰기한: '19.12.31.		○ 일몰기한: '22.12.31.	

개정이유

- 지역 성장동력 창출 및 자립적 발전 도모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9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등 무상귀속 부동산 감면 연장(지특법 제76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등 무상 귀속 부동산 감면 ○ 국가·지자체에 무상 귀속될 공공 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공공시설용지 - 재산세 100% ○ 일몰기한: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2.12.31.

개정이유

- 국가 등으로 귀속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비과세(지방세법 §9②) 및 지방공기업 무상귀속 토지의 재산세 면제(§85의2①)와 형평성 유지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0 산업(기술)단지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제도 보완 [지특법 제78조①~④]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시행자 감면 ○ 취득세 35%, 재산세(5년간) 수도권(首) 35%·비수도권(外) 60% ○ (일몰기한) '19.12.31.	<input type="checkbox"/> 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시행자 감면 ○ (좌동) ○ (일몰기한) '22.12.31.
<input type="checkbox"/>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 (신·증축) 취득세 50%(조례 +25%), 재산세(5년간) 首 35%·外 75% ○ (대수선) 취득세 25%(조례 +15%) ○ (일몰기한) '19.12.31.	<input type="checkbox"/>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 (좌동) - 증축 시 부속토지 감면 제외 ○ (좌동) - 부속토지 감면 제외 ○ (일몰기한) '22.12.31.

□ 개정이유

-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원
- 다만, 감면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취득세 소급 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증축 및 대수선의 부속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 (증축·대수선 시 감면대상) 산업용 건축물등 및 부속토지 → 산업용 건축물등

□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1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지특법 제78조의2]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특정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감면 * 산업집적기반시설 설치·운영 등 ○ 취득세 35%, 재산세 수도권 50%·비수도권 75% ○ (일몰기한)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율 연장 및 조정 ○ 취득세 25%, 재산세 25% ○ (일몰기한) '22.12.31.

□ 개정이유

-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및 과세형평성 제고
 ※ 근거 조문을 기존 제78조제6항에서 제78조의2로 변경

□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II.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내수 활성화 지원

1 지방농수산물공사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지특법 제15조제2항)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면 ○ 농수산물공사 고유업무 부동산 -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농수산물공사 법인등기 - 등록면허세 100% ※ 지방자치단체 주식비율 상당세액 한 ○ 100%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감면을 적용 가능 ○ 일몰기한: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대상 명확화 및 감면을 조정 ○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 유통사업 직접사용 부동산 - 취득세 50%, 재산세 50% ○ 농수산물공사 법인등기 - 등록면허세 50% ※ 지자체투자비율 명확화(대통령령 위임)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50% 추가 감면 가능 ○ 일몰기한: '22.12.31.

□ 개정이유

- 농어민·유통 상인 보호 및 지방공사 간 조세형평 제고

□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 감면 연장 (지특법 제35조 제1항)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주택연금보증대상 담보등기 감면 ○ 등록면허세 75% ○ 일몰기한: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한도 설정) ○ (5억원 이하 1주택자) : 현행과 같음 (그 외) : 300만원 공제 ○ 일몰기한: '21.12.31.

□ 개정이유

- 서민 및 연금생활자 생계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지속하되, 담세력이 높은 주택소유자에 대한 감면은 한도를 설정

□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지특법 제36조의2)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시 취득세 50% 감면 ○ (소득요건)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외별이 5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일몰기한 : '19.12.31.	<input type="checkbox"/> 1년간 감면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0.12.31.

□ 개정이유

-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

□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취득)하는 때부터 적용

4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연장 및 확대 (지특법 제46조)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중견기업 - 취득세 35%, 재산세 35% * 과밀억제권역 제외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 취득세 60%, 재산세 50%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input type="checkbox"/> 일몰기한: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및 확대 <input type="checkbox"/> (현행과 같음) <input type="checkbox"/> (현행과 같음) <input type="checkbox"/>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 현행 감면율 + 10%p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 §10(시행령 별표7) <input type="checkbox"/> 일몰기한: '22.12.31.

□ 개정이유

- 연구개발을 통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을 위해 현행 감면 연장
- 일본 수출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포함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10%p 감면 추가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 3대 일본 수출규제품목 중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해당 분야에 既 포함, 불화수소는 올해 법 개정(기재부)을 통해 '20년부터 포함될 예정

□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실계 (지특법 제63조 제항2행)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철도시설용 부동산 감면 <input type="checkbox"/> 취득세 25%, 재산세 25%, 재산세 도시지역분 25% 감면 <input type="checkbox"/> 일몰기한 :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연장 <input type="checkbox"/> 취득세 25% 감면 <input type="checkbox"/> 일몰기한 : '22.12.31.
<input type="checkbox"/> 철도차량 및 국가귀속용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취득세, 재산세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 면제 * 최소납부세제 제외 <input type="checkbox"/> 일몰기한 :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연장 및 문구명확화 <input type="checkbox"/> (현행과 같음) - 국가귀속용 철도차량 및 부동산에 한정하여 감면 <input type="checkbox"/> 일몰기한 : '22.12.31.

□ 개정이유

-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귀속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한 지원은 지속하되, 당기순이익을 고려하여 철도시설용 부동산 감면은 조정

□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실제 (지특법 제63조 제3항)

개정개요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철도역사 개발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50%, 재산세 50% 감면 ○ 일몰기한 :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연장 및 감면율 조정 ○ 취득세 25%, 재산세 50% ○ 일몰기한 : '22.12.31.
<input type="checkbox"/> 철도차량 감면 ○ 취득세 50% 감면 ○ 일몰기한 :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연장 및 감면율 조정 ○ (현행과 같음) - 고속철도차량은 취득세 25% 감면 ○ 일몰기한 : '22.12.31.

개정이유

-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감면을 연장하되, 노선별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감면율을 차등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63조 제5항)

개정개요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 ○ 취득세,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면제 * '20년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연장 ○ (현행과 같음) - 「도시철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한정 ○ 일몰기한 : '22.12.31.
<input type="checkbox"/> 철도차량 감면 ○ 취득세 면제 * '20년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2.12.31.
<input type="checkbox"/> 법인·구분지상권 설정 등기 ○ 등록면허세 면제 ○ 일몰기한 :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2.12.31.

개정이유

- 대중교통 지원을 위해 감면 연장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8 연안항로 화물운송용 천연가스 선박 감면연장 [지특법 제64조 제3항]

□ 개정개요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연안항로 취항 선박 감면 <input type="checkbox"/> 취득세 세율 △2%p 적용 <input type="checkbox"/> 추정규정 없음 <input type="checkbox"/> 일몰기한: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기한 연장 및 추정규정 신설 <input type="checkbox"/> (현행과 같음) <input type="checkbox"/> 2년 내 매각·증여 등 목적 외 사용시 추정근거 신설 <input type="checkbox"/> 일몰기한: '21.12.31.

□ 개정이유

- 해운산업 활성화 및 항만지역 대기환경 개선 지원

□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9 친환경 자동차·버스 감면 확대 [지특법 제66조 제4항, 제70조 제4항]

□ 개정개요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전기·수소자동차 취득세 면제 <input type="checkbox"/> 140만원 한도 <input type="checkbox"/> 일몰기한 : '19.12.31. <신설>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input type="checkbox"/> (현행과 같음) <input type="checkbox"/> 일몰기한 : '21.12.31. <input type="checkbox"/> 전기·수소버스 취득세 면제 신설 <input type="checkbox"/>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전기버스와 수소전기버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모델 한정 <input type="checkbox"/> (감면내용)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input type="checkbox"/> 일몰기한: '21.12.31.

□ 개정이유

- 미세먼지 등 지역 대기환경 개선 및 수소 등 신기술 육성 지원

□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0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조정 [지특법 제74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의 환지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과표 공제 ○ 일몰기한: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2.12.31.
<input type="checkbox"/>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의 체비지·보류지(시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범위) 도시개발·재개발사업 ○ (감면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19.12.31. 	<input type="checkbox"/> 조문체계 정비 및 감면 재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범위) 도시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개발사업 체비지·보류지 중 주택분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 (§74④ 2호)으로 감면적용 ○ (감면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22.12.31.

□ 개정이유

- 개발정비사업 활성화 및 원거주자 재정착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 지속
- 시행자의 사업비 충당을 위한 재원으로 유사 성격의 감면과 형평성 고려하여 감면 축소

□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실시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기존사업의 경우 종전 감면 규정 적용(경과조치)

11 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조정 [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4항, 제6항]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개발사업(舊 재개발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8.2.9.개정 이전 ○ (감면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74③ 1호)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 (§74③ 2호) -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85㎡이하 주택(청산금 포함)(§74③ 4호) ○ (감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자 : 취득세 75%, - 원소유자 :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input type="checkbox"/> 조문체계 정비 및 감면 재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개발사업(舊 재개발사업, 舊도시 환경정비사업* 포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8.2.9.개정 이후 재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경우에 한정 ○ 조문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74④ 1호) - (현행과 같음, §74④ 2호) - (현행과 같음, §74④ 3호) ○ 감면율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자 : 취득세 50% - 원소유자 : 주택면적별 차등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이하) : 취득세 75% · (60~85㎡이하) : 취득세 50% ○ (감면요건) 1가구 1주택 ○ 일몰기한: '22.12.31.
<input type="checkbox"/> 일몰기한: '19.12.31.	<input type="checkbox"/> 일몰기한: '22.12.31.

□ 개정이유

- 개발정비사업 활성화 및 원거주자 재정착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되, 재개발사업의 수익성 및 유사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 축소
- 도정법 개정('18.2.7.)에 따른 재개발사업(舊주택재개발사업+ 舊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제도적 특성이 유사하여 종전과 같이 구분 곤란함을 고려하여 감면 확대

□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기존사업의 경우 종전 감면 규정 적용(경과조치)

12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이관 [지특법 제78조의3]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신설 이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등	<input type="checkbox"/>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항~제3항) 외국인투자신고 사업 직접사용부동산 등 취득세·재산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7년(조례 15년)간 30~100% ※ 감면대상·절차 등은 조특법 준용 ○ (제4항~제6항) 외국인투자 적용 세부사항 등 ○ (제7항~제10항) 증자 시 감면 적용 등 ○ (제11항~제15항) 추징규정 및 기타사항 ○ 일몰기한: '22.12.31. (단, '19년까지 신청법인은 종전 조특법 규정 적용)

□ 개정이유

-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지원

□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3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유예기간 연장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조]

개정개요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 국세 공제·감면액의 10% 수준으로 일괄 부과하도록 규정 - (유효기간) 2019.12.31.까지	<input type="checkbox"/> 공제·감면 유예기간 연장 ○ (현행과 같음) - (유효기간) 2020.12.31.까지

개정이유

- 최근 투자 위축, 수출 둔화 등에 따라 서민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지원을 통한 내수활성화 필요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III.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 지원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등 조정
[지방세기본법 제11조의2, 지방세법 제69조 제2항, 제71조 제3항]

개정개요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지방소비세 세율 ○ 과세표준(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5 <input type="checkbox"/> 안분방식 ○ 지역별 소비지출 및 취득세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안분 <input type="checkbox"/> 세입귀속 ○ 시·도세	<input type="checkbox"/>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 과세표준의 100분의 21 <input type="checkbox"/> 안분방식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사업 전환과 연계하여 인상분 배분방안 규정 <input type="checkbox"/> 세입귀속 ○ 시·군·구 전환사업 보전분과 조정 교부금 보전분을 시·군구세로함

개정이유

- 지방소비세율 인상(15% → 21%)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적용시기

- '19. 1. 1. 이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2 농지확대개발 및 교환·분합용 농지 등 감면 연장(지특법 제8조)

□ 개정개요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농지확대개발 및 교환·분합용 농지 등 감면 <input type="checkbox"/> 농지확대개발사업 및 농업생산기반개발사업 농지(§8①) -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input type="checkbox"/>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농지 등(§8②) -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input type="checkbox"/> 일몰기한: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input type="checkbox"/> (현행과 같음) ※ 농어촌공사는 제외 (제13조 농어촌공사 감면 적용) <input type="checkbox"/> (현행과 같음) ※ 농어촌공사는 제외 (제13조 농어촌공사 감면 적용) <input type="checkbox"/> 일몰기한: '22.12.31.

□ 개정이유

- 농지 확보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 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제도 보완(지특법 제11조①)

□ 개정개요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농업법인* 설립 후 2년 내 영농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input type="checkbox"/> 취득세 100% <input type="checkbox"/> (일몰기한) '19.12.31.	<input type="checkbox"/> 영농목적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 ※ 전체 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 법인, 자경농민 감면(법 제6조①, ②) 준용 - 전 지역 부동산 → 도시지역 제외 부동산 → 농지, 임야(농지 조성용), 농업용 시설물 <input type="checkbox"/> 취득세 75% <input type="checkbox"/> (일몰기한) '20.12.31.

□ 개정이유

-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 및 과세형평성 제고
 ※ 농업법인에 대한 다른 감면(법 제11조②)과 일몰기한 일치 위해 1년 연장

□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기존 설립 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세 100% 감면 적용

4 농어촌공사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 연장 및 재설계(지특법 제13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농어촌공사 감면 ○ 농지매매사업·농지재개발 등을 위한 취득 부동산(§13②1호) - 취득세 50%, 재산세 50% ○ 농업생산기반시설용 토지 및 시설물 (§13②1의2호) - 취득세 50%, 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18) ○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용 농지 (§13②2호) - 취득세 50%(농업인 환매시 100%), 재산세 50% ○ 농·어업 경영규모 확대 목적 취득 농지 (§13②3호) - 취득세 50%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부동산 (§13②4호) - 취득세 30% ○ 농지시장 안정을 위한 매입 농지 등 (§13②5호) - 취득세 50% ○ 일몰기한: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현행과 같음) ○ 재산세 감면을 조정 ※ 他공사·공단과의 형평성 고려 - 취득세 50%, 재산세 50%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취득세 감면을 조정 ※ 他공사·공단과의 형평성 고려 - 취득세 25%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2.12.31.

개정이유

- 농지의 효율적 관리 및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농어촌공사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 연장

-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용 토지 및 시설물,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사업은 他공사·공단과*의 형평성을 고려 감면을 일부 조정

* 국가공사·공단 : 25%, 지방공사 : 50%, 지방공단 : 100%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18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감면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법정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 취득세 25%, 재산세 25% ○ 일몰기한: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2.12.31.

개정이유

- 장애인 고용 안정 및 직업재활을 위한 세제지원 지속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22조제2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 사회복지법인·단체, 한센치료시설 등 해당 사업 직접사용 부동산 - 취득세,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지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100% ○ 사회복지법인 등 면허, 사업장 -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재산·종업원분) 100% ○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 등기 - 등록면허세(등록분), 주민세(균등분) 100% ○ 일몰기한: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및 대상 일부 조정 ○ (현행과 같음) ※ 감면대상 단체 등 명확화(대통령령 위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2.12.31.

개정이유

- 취약계층 보호·복지 증진 및 조세 합리성 제고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 **권익증진을 위한 감면 연장 및 재실계 (지특법 제23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법률구조법인(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및 한국소비자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을 연장 및 단계적 조정 ○ 현행 감면 연장('20) 취득·재산세 50%('21) 취득·재산세 25%('22) ○ (일몰기한) '22.12.31.

개정이유

- 권익증진 지원 및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8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실계 (지특법 제27조 제1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근로복지공단 고유업무 감면 ○ 취득·재산세 25%, ○ 일몰기한: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및 단계적 조정 ○ ('20) 취득·재산세 25%, ('21~'22) 취득세 25% ○ 일몰기한: '22.12.31.

개정이유

-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해 감면을 연장하되, 지방사무 관련성 반영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28조 제2항]

개정개요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유업무 부동산 ○ 취득세 25%, 재산세 25% 감면 ○ 일몰기한 :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2.12.31.

개정이유

- 지방의 재해예방사무와 관련성이 높은 산업재해예방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0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28조 제3항]

개정개요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유업무 부동산 ○ 취득세 25%, 재산세 25% 감면 ○ 일몰기한 : '19.12.31.	<input type="checkbox"/> 취득세 감면 연장 ○ 취득세 25% ○ 일몰기한 : '22.12.31.

개정이유

-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감면을 연장하되, 지방사무 관련성 반영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30조제1항]

개정개요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감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법정 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 취득세 25%, 재산세 25% ○ 일몰기한: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2.12.31.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치료·재활을 위한 세제지원 지속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2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대한 감면 신설 [지특법 제37조 제1항]

개정개요

현행	개정안
<신설>	<input type="checkbox"/>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대한 감면 신설 ○ 의학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 75%,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75%('20) 취득세 50%, 재산세(5년간) 50%('21) ○ (일몰기한) '21.12.31.

개정이유

- 의료업 활성화 지원 및 과세형평성 제고
 ※ 기존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과 일몰기한 일치 위해 '21년까지 설정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3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40조의3제3호)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대한적십자사 감면 ○ 대한적십자사 의료 외 사업 직접사용 부동산 - 취득세 25%, 재산세 25% ○ 일몰기한: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2.12.31.

개정이유

- 이재민 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활동을 위한 세제지원 지속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4 학술단체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지특법 제45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학술연구단체 등에 대한 감면 ○ 학술연구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 취득세,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100% ○ 장학단체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 취득세,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80% ○ 장학법인 등 장학금 지급 목적 임대용 부동산 - 취득세,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80% ○ 일몰기한: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및 대상 일부 조정 ○ 학술단체의 학술연구사업 직접사용 부동산 - 취득세, 재산세 100% ○ 장학법인(공익법인) 장학사업 직접사용 부동산 - 취득세, 재산세 100% ○ 장학법인(공익법인) 장학재단 마련 임대용 부동산 - 취득세, 재산세 80% ○ 일몰기한: '21.12.31.

개정이유

- 비영리단체 공익사업 장려 및 조세 합리성 제고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5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지특법 제47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한국환경공단 감면 ○ 환경복합시설의 설치 등(\$47-1) - 취득세 25%, 재산세 25% ○ 자원순환 촉진 사업 등(\$47-2) - 취득세 25%, 재산세 25% ○ 일몰기한: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2.12.31.

개정이유

-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 지원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6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지특법 제48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립공원공단 감면 ○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 - 취득세 25%, 재산세 25% ○ 일몰기한: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2.12.31.

개정이유

- 다양한 공원시설 설치 등 국립공원 보존·관리 지원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7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연장(지특법 제49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해양환경공단 부동산·선박 감면 ○ 해양환경공단의 법정 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 취득세 25%, 재산세 25% ○ 해양오염방제설비 선박 - 취득세 25%, 재산세 25% ○ 일몰기한: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2.12.31.

개정이유

- 해양오염 방제 및 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세제지원 지속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8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지특법 제52조)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감면 ○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진흥단체의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 취득세,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100% ○ < 항 분리 > ○ 일몰기한: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및 대상 일부 조정 ○ 문화예술단체의 문화예술사업 직접 사용 부동산 - 취득세, 재산세 100% ※ 감면대상 단체 명확화(대통령령 위임사항) ○ 체육단체의 체육진흥사업 직접 사용 부동산 - 취득세, 재산세 100% ※ 감면대상 단체 명확화(대통령령 위임사항) ○ 일몰기한: '21.12.31.

□ 개정이유

- 비영리단체 공익사업 장려 및 조세 합리성 제고

□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9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69조)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감면 ○ 취득세 25% ○ 일몰기한: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2.12.31.

□ 개정이유

- 자동차 사고 예방 업무 지원을 위해 세제지원

□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0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지특법 제72조)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별정우체국사업 감면 ○ 별정우체국 사업용 취득 부동산 - 취득세 2% 세율 경감 ○ 별정우체국 공용·공공용 부동산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 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100% ○ 별정우체국 사업장 -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 100% ○ 일몰기한: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및 감면대상 명확화 ○ 별정우체국 피지정인의 별정우체국 사업 직접 사용 부동산 - 취득세 2% 세율 경감 - 재산세 10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2.12.31.

□ 개정이유

- 장기간 국가사무를 대행해 온 별정우체국에 대한 지원 지속

□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1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5항]

□ 개정개요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74③ 3호) - 현지개량주택 및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85㎡ 이하 주택(청산금 포함) (§74③ 5호) ○ (감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자 : 취득세 75%, - 원소유자 :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및 조문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문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74⑤ 1호) - (현행과 같음, §74⑤ 2호)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2.12.31.

□ 개정이유

- 도시저소득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현행 감면 연장 및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감면대상을 명확화하여 납세자 혼란을 방지

□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2 수자원공사 국가등 무상귀속 부동산 감면 연장 [지특법 제77조]

□ 개정개요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수자원공사 국가등 무상귀속 부동산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자체에 무상 귀속될 공공 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공공 시설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 100% ○ 일몰기한: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2.12.31.

□ 개정이유

- 국가 등으로 귀속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비과세(지방세법 §9②) 및 지방공기업 무상귀속 토지의 재산세 면제(§85의2①)와 형평성 유지

□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3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개정 [지특법 제81조]

□ 개정개요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이전공공기관 감면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소속 공무원 ○ 세종청사관리소 소속 공무원 	<input type="checkbox"/> 이전공공기관 감면대상 범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소속 공무원(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된 경우로 한정) - <삭제>

□ 개정이유

- 유사 감면대상과의 과세형평성 제고

□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지특법 제85조 제1항]

□ 개정개요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사업 법인의 갱생보호사업용 부동산 감면 ○ 취득·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율 연장 및 단계적 조정 ○ 현행 감면 연장('20) 취득·재산세 50%('21) 취득·재산세 25%('22) ○ (일몰기한) '22.12.31.

□ 개정이유

- 갱생보호사업 지원 및 과세형평성 제고

□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5 지방공사공단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지특법 제85조의2]

□ 개정개요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지방공사·공단 등 감면 ○ 지방공사 - 취득세,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등록면허세 50%(×지자체 주식 소유비율) ○ 지방공기업 국가등 무상귀속 부동산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지방공단 - 취득세,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등록면허세 100%(×지자체 주식 소유비율) ○ 지방출자·출연법인 - 취득세,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등록면허세 50%(×지자체 주식 소유비율) ○ 일몰기한: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연장 및 재설계 ○ 지방공사 - 취득세, 재산세 50%(×지자체 주식 소유비율) ○ 지방공기업 국가등 무상귀속 부동산 - 재산세 100% ○ 지방공단 - 취득세, 재산세 100%(×지자체 주식 소유비율) ○ 지방출자·출연법인 - 취득세, 재산세 50%(×지자체 주식 소유비율) ※ 재산세 도시지역분(도시계획사업), 등록 면허세(수수료) 등 특정지출 목적 세목 정비 ○ 일몰기한: '22.12.31.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사무를 대행하는 공사·공단 등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방세 감면은 연장하되, 목적세적 성격의 세목은 정비

□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6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88조 제1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새마을운동조직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감면 <input type="radio"/> 취득·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최소납부세제 '20년 적용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율 연장 및 조정 <input type="radio"/> 취득·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22.12.31.

개정이유

-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환경 개선 지원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7 정당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89조 제1항 내지 제4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정당에 대한 감면 <input type="radio"/> 취득·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 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등록 면허세·주민세(재산·종업원분) 100% ※ 최소납부세제 '20년 적용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input type="radio"/> (현행과 같음)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22.12.31.

개정이유

- 정당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지원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8 마을회등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90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마을회등의 공동소유 부동산·선박에 대한 감면 <input type="radio"/>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20년 적용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input type="radio"/> (현행과 같음)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22.12.31.
<input type="checkbox"/> 마을회등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감면 <input type="radio"/>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 시설세(특정부동산분) 100% ※ 최소납부세제 '20년 적용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input type="radio"/> (현행과 같음)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22.12.31.
<input type="checkbox"/> 마을회등에 대한 감면 <input type="radio"/> 주민세(재산·종업원분) 100%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19.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input type="radio"/> (현행과 같음)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22.12.31.

개정이유

- 주민공동체 구성·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원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IV. 조세정의 확립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

1 다단계·우회행위 등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방안 마련 [지방세징수법 제7조]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다단계거래 및 우회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 적용

□ 개정이유

- 다양한 조세회피수단 방지를 위한 명문화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2 고액 지방세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 [지방세기본법 제39조]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 금액구분 없이 5년 ○ <신 설>	□ 고액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 ○ 5천만원 미만 : 5년 ○ 5천만원 이상 : 10년

□ 개정이유

- 고액 채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권 강화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고액·상습채납자 감치신청 제도 도입 [지방세징수법 제7조의2]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채납처분 면탈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있으나 행정별로서의 감치 신청 관련 제도 없음	□ 호화 생활을 영위하며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상습 채납자에 대해 지자체장이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이후)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방안 도입

□ 개정이유

- 호화생활 고액·상습채납자에 징수 실효성 제고

□ 적용시기

- '20. 1. 1. 이후부터 적용

4 전국 합산 고액채납자에 대한 제재 등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2]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자체별 분산된 고액 채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금융거래정보 본점조회 등이 불가하여 채납처분 집행의 실효성 저하	□ 지자체별 분산된 채납액을 합산하여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 조항이 해당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액채납자에 대한 채납처분의 실효성 확보

□ 개정이유

- 지자체별 채납액이 분산되어 있는 채납자에 대한 징수실효성 제고

□ 적용시기

- '20. 1. 1. 이후부터 적용

5 체납처분에 따른 질문검사권 범위 확대 [지방세징수법 제36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질문·검사권 행사 대상이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친족으로 한정	<input type="checkbox"/>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질문·검사권 행사의 대상을 확대

개정이유

-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질문·검사권 강화

적용시기

- '20. 1. 1. 이후부터 적용

6 상습 자동차세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 [지방세법 제131조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도로교통법(제93조)은 음주운전 등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	<input type="checkbox"/> 자동차세를 10회이상 체납한 경우 지자체장이 체납자의 운전면허 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개정이유

- 상습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

적용시기

- '20. 1. 1.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체납되는 경우부터 적용

V. 오래된 관행 및 불합리한 과세체계 개편

1 무신고 및 허위신고 취득세 과표 개선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 및 제21조 제1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신고시 : 시가표준액 ○ 신고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은 경우 : 시가표준액 ○ 부동산거래신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법인장부 상 확인되는 취득 등 : 사실상 취득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거래 신고가격, 법인장부 상 확인되는 가격 등 	<input type="checkbox"/> 조사·확인된 금액을 과표로 활용 <p>(좌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금액이 부동산거래신고 조사, 국세청 통보자료에 의해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 확인된 금액 - 부족액 만큼 추정

개정이유

- 무신고, 과소신고 등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 조사, 국세청 통보자료에 의해 확인된 금액으로 과세하여 조세정의 실현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 개정개요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세율 ○ 3단계 단순누진세율 체계(계단형) - 6억원 이하 : 1%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2% - 9억원 초과 : 3%	<input type="checkbox"/> 구간별 기준금액 및 세율 조정 ○ 누진 단계 세분화(사선형) - (좌 동)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Y = \frac{2}{3}X - 3$ - (좌 동)

□ 개정이유

- 6억원 및 9억원에서 조금만 취득가액이 증가해도 세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문턱효과를 해소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려는 유인을 제거하고, 세부담을 합리화

□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신탁재산의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 범위 합리화 [지방세법 제13조]

□ 개정개요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세 중과 대상 ○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 - 본점·주사무소용으로 신·증축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 위탁자가 본점용 등으로 사용하는 신탁재산 포함 ○ 법인설립·지점설치·전입 후 5년내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 (용도 및 신·증축 여부 무관)	<input type="checkbox"/> 신탁재산의 중과세 범위 합리화 ○ 범위 명확화 - (좌동) - 신탁재산도 위탁자의 본점·주사무소용으로 신·증축한 경우로 한정됨을 명확화 ○ 신탁재산 추가

□ 개정이유

- 중과 범위를 명확화하고, 본점과 지점 간,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간 과세형평성 제고

□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재산분 주민세 탄력세율 범위 개선(안 제81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재산분 주민세 탄력세율 범위 ○ 표준세율* 이하로만 가능 * 사업소 면적 1㎡당 250원	<input type="checkbox"/>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함 ○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가능

개정이유

- 재산분 주민세의 탄력세율 범위 타 세목*과 형평성 제고 및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 확대
- *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대부분 지방세 세목은 표준세율의 50% 가감조정 가능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타당성 검토제도 도입(지방세법 제106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대한 관리제도 미비 ○ <신 설>	<input type="checkbox"/> 타당성 평가 등 관리제도 도입 ○ 분리과세 대상에 대한 타당성 평가 근거 마련 ○ 분리과세 대상 신설시 지방재정 부담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개정이유

- 분리과세 대상의 타당성 평가 등을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20.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6 개별 종교단체 등에 대한 토지분 합산범위 개선(지방세법 제119조의3)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개별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합산범위 <input type="checkbox"/> 개별 종교단체의 토지를 일괄로 종단·시·군·구별로 합산 과세	<input type="checkbox"/> 개별단체별로 합산 <input type="checkbox"/> 종단 명의로 토지가 각 개별 종교단체 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 개별 종교단체별로 구분하여 합산 과세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개정이유

- 합산범위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과세체계 마련

적용시기

- '20.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7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대통령령 위임(지방세법 제128조의3항 및 제4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연납시 자동차세 공제 <input type="checkbox"/> 연세액의 10% 공제	<input type="checkbox"/> 공제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input type="checkbox"/>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공제

개정이유

- 과세여건 변화, 경제상황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방세법에서 공제율의 범위만 규정, 구체적인 공제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적용시기

- '2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8 지역자원시설세 목적 및 분류체계 정비(안 제141조~제147조)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과세목적			<input type="checkbox"/> 분류체계·과세목적 정비		
세분류	과세대상	목적	세분류	과세대상	목적
특정 부동산분	건축물, 선박	소방시설 지원	소방분	건축물, 선박	소방지원
	건축물·토지	기타 공공시설 지원	<삭제>	※ 이종부담 우려 등 해소	
특정 자원분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전, 화전	자원보호·개발 환경개선· 지역균형개발	특정 자원분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지역개발, 주민생활 환경개선
			특정 시설분	컨테이너, 원전, 화전	

□ 개정이유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목적에 실제 사용 현황을 반영하여, '주민생활 환경개선', '지역개발' 사업 및 소방사무 지원확보 목적임을 명확하고, - 세분류를 과세목적에 맞게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및 소방분으로 구분함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9 지방세 이자상당가산액 도입 (지특법 제178조)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신설>	<input type="checkbox"/> 지방세 이자상당가산액 도입
○ 본세만 추징	○ 부동산에 대해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시 본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 -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미가산 ○ 이자상당액 : 1일 10만분의 25로 규정(국세와 동일)

□ 개정이유

- 감면제도 실효성 확보 및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VI. 납세편의 및 납세자 권리 제고

1 경정청구 기한의 일치 (지방세기본법 제50조)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경정청구 기한 불일치 ○ 일반 경정청구 기한 : 5년 - 결정·경정의 경우 : 90일 ○ 후발적사유의 경정청구 기한 : 3개월	<input type="checkbox"/> 경정청구 기한 일치 ○ <좌 동> - 결정·경정의 경우 : 90일 ○ 후발적사유의 경정청구 기한 : 90일

□ 개정이유

- 납세자 혼란 및 불형평 해소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일 이후 경정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

2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제출요구 금지 등(지방세기본법 제80조)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신 설>	<input type="checkbox"/> 자료요구의 범위 ○ 세무조사와 직접관련 없는 자료 요구 금지
<input type="checkbox"/> 재조사 가능 범위 ○ 지방세 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 ○ 거래상대방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 2개 이상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	<input type="checkbox"/> 일부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부분조사) 이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재조사 가능 ○ <좌 동> ○ <좌 동> ○ <좌 동>
<input type="checkbox"/> <신 설>	<input type="checkbox"/> 부분 세무조사분 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일 경우

□ 개정이유

- 세무조사 권한 남용 방지 및 납세자 혼란 해소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일 전에 세무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도 적용

3 제3자 신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 및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지방세기본법 제8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납세자의 위임을 받은 제3자에게 과세정보 제공 및 납세증명서 발급 - <신 설>	<input type="checkbox"/> <좌 동> - 다만, 납세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제3자에게 과세정보 제공 및 납세증명서 발급을 제한

개정이유

- 납세자의 신분증 및 위임장 위변조로 인한 납세자 권익 침해를 방지

적용시기

- 이 법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대상 확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대상 ○ 감사, 지도 및 점검 결과에 따라 과세할 경우 ○ 세무조사 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조사에 따라 과세할 경우 ○ <신 설>	<input type="checkbox"/>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 제외)

개정이유

-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와 절차적 권리보호

적용시기

- 이 법 시행일 이후 납세고지분부터 적용

5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 확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불복청구 제외 대상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 포함) ○ 범칙사건조사에 따른 통고처분 ○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처분 ○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input type="checkbox"/>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도 불복청구 대상에 포함 ○ 이의신청,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삭 제)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 납세자 권리구제 기회 확대

적용시기

-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6 불복청구 결정기간 경과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명확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불복청구는 결정기간(90일)내에 납세자에게 결정통지 필요 ○ 이의신청 결정 미통지시 → 심사청구·심판청구 가능 : 규정 있음 ○ 심사청구·심판청구 결정 미통지시 → 행정소송 가능 : 규정 없음	<input type="checkbox"/> 불복청구 결정기간 경과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명확화 ○ <좌 동> ○ 심판청구 결정 미통지시 → 행정소송 가능 : 규정 마련

개정이유

- 규정 명확화로 납세자 혼란 해소

적용시기

-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7 영세납세자 지원 위한 관선대리인 도입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대리인 <input type="checkbox"/> 납세자가 직접 대리인 선임 가능 <input type="checkbox"/> <신 설>	<input type="checkbox"/>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대리인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관선대리인)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무료대리인을 선임 - (신청자격) 보유재산액 5억원 이하 (조례에서 따로 정함) + 소득 5천만원 이하 ※ 다만, 보유재산액 및 소득 판단시 배우자도 포함

□ 개정이유

-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 지원

□ 적용시기

- '20.3.2일 이후 불복청구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능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추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 내 '담당부서'에서 선정	<input type="checkbox"/>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 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개정이유

-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절차의 투명성·객관성 제고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9 자동이체를 통한 지방세 납부대상 확대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24조)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input type="checkbox"/> 정기분 지방세 <input type="checkbox"/> (신 설)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범위 확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u>수시분 지방세</u>

□ 개정이유

- 대국민 지방세 납부편의 확대

□ 적용시기

- '20. 1. 1. 이후부터 적용

10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압류해제 규정 신설(지방세징수법 제63조)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사실상 소멸·멸실된 것으로 인정하는 차량에 대한 압류해제의 근거 부재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장이 '사실상 소멸·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차량'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개정이유

-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에 대한 체납처분 합리화

□ 적용시기

- '20. 1. 1. 이후부터 적용

11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취득세 납세지 개선 [지방세법 제8조]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선박 취득세 납세지 ○ 선박 등록지인 '선적항' 소재지 - 선박의 일종인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선적항'이 없어 납세지 혼란 * 「수상레저법」에 따라 '주소지'에 등록	<input type="checkbox"/> 납세지를 '등록지'로 명확화 ○ 일반 선박 : 선적항 소재지 ○ 동력수상레저기구 : 주소지

□ 개정이유

-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 혼선을 방지

□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2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절차 개선 [지방세법 제60조]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의 담배 소비세 신고·납부 절차 상이 ○ (제조자) 반출일 다음달 말일까지 전국 시·군에 신고·납부 ○ (수입업자) 반출일 다음달 말일까지 주사무소 소재 지자체 신고·납부 ※ 주사무소 소재지 지자체 다음달 10일까지 시군에 세액 안분	<input type="checkbox"/> 담배소비세 신고·납부일 조정 및 제조자·수입판매업자 신고제도 일원화 ○ (제조자) 다음달 20일까지 신고·납부 ○ (수입업자) 다음달 20일까지 특광역시, 시·군에 신고·납부 ※ 주사무소 소재지 지자체 특별징수의무 삭제

□ 개정이유

- 지방세 전자신고·납부 현황 등을 고려,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기한 단축 및 담배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신고 절차 일원화
 ※ 신고납부일 단축으로 인한 신고절차 간소화 추진(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

□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3 균등분 주민세 과세를 위한 가족관계자료 요구근거 명확화(안 제79조의2)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요구 근거 명확화(신설) ○ 「지방세법」상 주민세 부과를 위한 가족관계전산자료 요구 목적* 및 제공 범위 신설 * 과세제외 되는 30세미만 미혼세대주 판단 등에 활용 ○ 행안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배포 근거 및 절차 신설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균등분 주민세 부과를 위해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4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개선 [지방세법 제89조]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지방소득세 납세지 ○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재지 ○ (개인) 소득세(국세) 신고당시 주소지 등	<input type="checkbox"/> 지방소득세 납세지 개선 ○ (법인) 현행과 같음 ○ (개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소지 등

□ 개정이유

- '20년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사전 신고안내 등 납세편의 제공이 가능하고 세입귀속에 부합토록 납세지 개정

□ 적용시기

- '20.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시행 전 법정신고기한 경과분 제외)

15 소규모사업자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지방세법 제95조제4항)

개정개요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 신고서 작성·제출시 신고인정	<input type="checkbox"/>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 자치단체장이 발송한 신고서와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시 신고인정 ※ (적용대상) 소규모사업자

개정이유

- '20년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시,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편의 지원

적용시기

- '20.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시행 전 법정신고기한 경과분 제외)

16 개인지방소득세 무관할 신고 접수제도 도입 (지방세법 제95조제5항, 제96조, 제103조의5제5항, 제103조의7제10항)

개정개요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등 접수 ○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서만 접수	<input type="checkbox"/> 신고 편의 제공 ○ 전국 자치단체 접수 가능

개정이유

- '20년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에서 신고서 등 접수가 가능토록 신고편의 제공

적용시기

- '20.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시행 전 법정신고기한 경과분 제외)

17 개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 개선 (지방세법 제101조제4항)

개정개요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개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 ○ 법정신고 기한 이후 신고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신청 불가	<input type="checkbox"/> 환급 신청 요건 완화 ○ 법정신고 기한 이후에 신고한 경우도 환급 신청 가능

개정이유

- 신고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세와 동일하게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적용방법

- '20.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시행 전 법정신고기한 경과분 제외)

18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및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항·제4항, 제103조의7제1항·제4항·제9항]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 작성 및 자치단체장에게 제출 <input type="checkbox"/> (신고기한) 국세*와 동일 * (예정신고) 양도일 말일부터 2개월 등 (확정신고) 익년 5월1일~5월31일 <input type="checkbox"/> (신고방법) 신고서 제출	<input type="checkbox"/> 자치단체장이 발송한 신고서와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시 신고 간주 <input type="checkbox"/> (신고기한) 국세 종료후 2개월 내 <input type="checkbox"/> (신고방법) 납부시 신고인정

□ 개정이유

- 신고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여 자치단체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신고서와 납부서 발송, 납세자는 세액만 납부시 신고 간주토록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 적용방법

- (예정신고)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확정신고) '20.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시행 전 법정신고기한 경과분 제외)

19 종합소득 확정신고 안내대상자 통보 등 근거 신설 [지방세법 제103조의59]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등 통보 <input type="checkbox"/> (사후 통보) 신고·결정·환급 등 자료 <input type="checkbox"/> (신설) <input type="checkbox"/> (신설)	<input type="checkbox"/> 통보 대상 확대 <input type="checkbox"/> 현행과 같음 <input type="checkbox"/> (사전통보) 납세자 안내 자료 <input type="checkbox"/> (실시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소득세 신고자료 통보

□ 개정이유

- '20년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시 납세자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국세 안내자료 및 신고자료 통보근거 신설

□ 적용방법

- '20.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시행 전 법정신고기한 경과분 제외)

20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감면 [지방세법 제103조의61]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 <input type="checkbox"/> 무신고(과소신고)시 가산세 부과	<input type="checkbox"/>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 감면 <input type="checkbox"/> 신고기한 경과 1개월 이내 신고(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면제 ※ (대상자)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

□ 개정이유

- '20년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정착시까지 한시적(2년간) 가산세 감면

□ 적용방법

- '20.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시행 전 법정신고기한 경과분 제외)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부과 시행 前 신고기한 경과분에 대한 사후관리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부칙 제13조제1항·제2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부과업무 ○ ~'19년 세무서, '20년 자치단체 ○ (신설)	<input type="checkbox"/> 신고·부과업무납세편의 고려 ○ (좌동) ○ 시행 전('19년) 세무서 신고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수정신고·무신고자 부과 등)는 세무서에서 처리

개정이유

- '20년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 전 이미 신고기한이 경과한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는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세무서에서 처리

적용방법

- '20. 1. 1.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Ⅶ. 현행 제도의 보완

1 세무조사의 정의 등 명확화 (지방세기본법 제2조 등)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세무조사 정의 ○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장부 등의 정의 ○ <신 설>	<input type="checkbox"/> 세무조사 정의 ○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 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 <input type="checkbox"/> 장부 등의 정의 ○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개정이유

- 세무조사 등 정의 명확화로 납세자 혼란 해소

적용시기

-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2 지방세 조합 설립 운영 근거 마련 (지방세기본법 제6조 등)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지자체별 징수체계에 따른 전국적으로 체납세가 분산된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시행, 체납세 징수, 압류재산 추적 등 효율적 징수의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분산된 체납세 징수 등 전국적인 지방세 관리체계가 필요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조합 설립 근거를 마련

개정이유

-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적용시기

-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3 지방소비세 시군구세 세입처리 특례 신설 [지방세기본법 제11조의2]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지방소비세는 시·도 세입으로 귀속	<input type="checkbox"/> <좌동> - 다만, 지방소비세 중 일부*를 시·군·구 세입으로 귀속 *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 및 이에 따라 감소하는 조정교부금 보전을 위해 시군구로 배분하는 금액

□ 개정이유

-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취지에 부합한 세입처리 방안 마련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4 자동차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명확화 [지방세기본법 제62조]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자동차세 연세액(年稅額) 일시납부 후 일할계산으로 인한 환급가산금 기산일 ○ (원칙) 소유권이전등록일·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 (예외) <신 설>	<input type="checkbox"/> 자동차세 연세액(年稅額) 일시납부 후 일할계산으로 인한 환급가산금 기산일 보완 ○ (좌동) ○ (예외)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이후일 경우 : 그 납부일의 다음날

□ 개정이유

-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라도 납부일이 소유권변동일 이후일 경우에는 환급금 기산일을 '납부일의 다음날'로 명확화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 최초로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5 세무조사 대상범위 현실화 [지방세기본법 제82조]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정기세무조사 대상 ○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input type="checkbox"/> 정기세무조사 대상 ○ (좌동)
<input type="checkbox"/> 비정기세무조사 대상 ○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 탈세제보 ○ 명백한 탈루 협의 ○ 납세자 신청 ○ <신 설>	<input type="checkbox"/> 비정기세무조사 대상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휴·폐업 및 대규모 건설공사*를 완료 * 건축물 과세표준 1,000억원이상에 한함

□ 개정이유

- 법인 소재 확인 곤란, 건설사 장부 등 증빙자료 확인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 세무조사의 어려움을 해소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 최초로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6 세무조사 시 장부 등 일시 보관 근거 마련 [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2]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신 설>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 장부보관 ○ (원칙) 납세자 장부보관 금지 ○ (예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등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보관

□ 개정이유

- 세무조사 시 납세자 권익보호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일 전에 세무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도 적용

7 **부분세무조사의 법적 근거 명확화 등 [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3]**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신 설>	<input type="checkbox"/> 세무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통합조사 ○ (예외) 비정기조사 사유*, 제조사 사유** 발생시 부분조사(특정세목, 특정항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탈세제보, 탈루나 오류혐의 명백, 납세자 신청 ** 탈루혐의 명백, 구제제도 결정에 따른 제조사, 조사 중 상대방 또는 다른 연도조사 필요

개정이유

-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효율적인 세무조사 운영

적용시기

-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

8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 [지방세기본법 제89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행정심판 임의적 전치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 	<input type="checkbox"/>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시·도 심사청구제도 폐지 병행

개정이유

- 조세체계 일치, 불복심사에 대한 전문성·독립성 강화, 불복절차 간소화 등

적용시기

- '21.1.1.일 이후 불복청구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9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체계 개편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등]**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지방세정보통신망 정보화업무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통신망과 연계 ○ <신 설> ○ <신 설> 	<input type="checkbox"/>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입정보통신망으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통신망 연계시 보안관리 강화 ○ 과세정보 공동 활용과 공개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정보제공 협조 ○ 지방세외수입의 관리체계 규정을 위한 행안부령 위임 규정 신설

개정이유

- 지방세입정보통신망 구축·운영으로 지방세입 관리체계 효율성 강화

적용시기

- '22.2.3.일 이후부터 적용

10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명칭 변경 [지방세기본법 제148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법령 유권해석 위원회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

개정이유

- 지방세 관계법령을 유권해석 심의하는 위원회임을 명확화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

11 지방세 소송참가 활성화 법적근거 마련 [지방세기본법 제150조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행안부 및 시도 소송 참가 제한적 ○ 시·군·구가 소송 단독수행 - 필요시 시·도 공동수행 또는 소송 보조 참가	<input type="checkbox"/> 행안부 및 시도 소송 참가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 신설 ○ 지방세 소송절차 중 시·도나 시·군·구의 필요에 따라 행안부(시도)의 소송참가 가능

개정이유

- 소송 대응 강화 및 소송현황 관리 체계화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

12 공매 대행기관으로 '지방세조합' 추가 [지방세징수법 제71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장을 대신하여 공매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정	<input type="checkbox"/>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한 압류 재산의 신속한 공매를 위해 공매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지방세조합을 추가

개정이유

- 지방세 체납에 따른 공매집행 효율화

적용시기

- '20. 1. 1. 이후부터 적용

13 부담부증여 규정 명확화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부담부증여시 채무액 인정 범위 ○ 채무에 <u>상당</u> 하는 부분	<input type="checkbox"/> 채무액 인정범위 용어 명확화 ○ 채무에 <u>해당</u> 하는 부분

개정이유

- 채무인정 금액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용어 개정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4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조경비용 포함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조경·도로포장 등의 공사비는 모두 토지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 ※ 지목변경 취득세율 : 2%	<input type="checkbox"/> 공사 목적에 따라 구분 ○ 지목변경에 수반 : 종전과 동일(지목변경비용에 포함) ○ 건축물 건축에 수반 : 신축 건축물의 원시취득 비용에 포함 ※ 원시취득 취득세율 : 2.8%

개정이유

- 건축물 건축에 수반하는 조경 등 비용은 토지가 아닌 건물 효용가치를 증가시킴에도 토지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불합리를 개선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5 이륜차 취득세율 체계 명확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자동차 취득세 세율 ○ 비영업용 자동차 - 승용자동차 : 7%(경차 4%) - 그 외 : 5%(경차 4%) ○ 영업용 자동차 : 4% ○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 2%	<input type="checkbox"/> 세율 명확화 }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는 제외됨을 명확화 ○ 125cc 초과는 비영업용(5%) 또는 영업용(4%) 자동차 세율로 과세됨을 명확화 ※ 전기이륜자동차에 대한 세율체계를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사항과 연계

개정이유

- 이륜자동차 세율 적용의 혼선을 방지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6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방세조합장 추가 (지방세법 제71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현행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중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납입관리자가 될 수 있는 기관으로 지방세조합장을 추가하여 전국 공통 업무인 납입관리 업무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개정이유

- 지방세조합장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추가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 '20. 1. 1. 이후부터 적용

17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명확화(안 제75조 및 제77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균등분 주민세는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와 비과세인 경우 별도 규정 ○ (과세제외) 세대원과 이에 준하는 사람 ○ (비과세) 기초생활수급자, 1년미만 체류 외국인, 미성년자	<input type="checkbox"/>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납세의무자 조항으로 통합 ○ (과세제외) ① 세대원과 이에 준하는 사람, ② 기초생활수급자, ③ 1년미만 체류 외국인, ④ 미성년자

개정이유

-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판단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8 종업원분 주민세 공제 적용기준 명확화(안 제84조의5)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추가고용시 종업원분 주민세 공제 <input type="radio"/> (공제 제외* 기산일) 신고하는 달 * 과거 5년내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했던 적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적용기준 명확화 <input type="radio"/> (기산일) 해당월* * 추가고용을 하여 50명 초과한 달

□ 개정이유

- 과거 5년동안 50명 초과고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산점을 '신고하는 달'에서 '해당 월'로 하여 추가고용을 하여 종업원 50명을 초과한 사업장의 공제 적용 명확화



□ 적용시기

- 규정 명확화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19 법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표준 명확화 [안 제91조, 제103조, 제103조의19, 제103조의21, 제103조의34, 제103조의41, 제103조의47]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법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표준 <input type="radio"/>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	<input type="checkbox"/> 법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표준 명확화 <input type="radio"/>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명확화 * 개인지방소득세 포함

□ 개정이유

- 법인세·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동일함을 법령상 명확히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혼란 방지

□ 적용시기

- '20.1.1.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0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계산 절차 보완 [안 법893조, ⑫]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계산 <input type="radio"/> 지방소득세 계산 시 조문 상 과다감면, 과소납부 우려 ※ 「지방세법」(법률 제16194호, '18.12.31.) 개정 조문	<input type="checkbox"/>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계산 보완 <input type="radio"/> 세액계산 절차 조문 개정

□ 개정이유

-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조문 수정 보완

□ 적용시기

- '20.1.1.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1 법인지방소득세 일괄경정청구 절차 명확화 [안 법8 103의24⑦]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일괄경정청구 절차 등 미비	<input type="checkbox"/>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일괄경정청구 위임 근거 명확화 ○ 수정신고 및 납부뿐 아니라 일괄경정청구 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 근거 마련

개정이유

- 법인지방소득세 일괄경정청구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 편의 제공

적용시기

- '20.1.1. 부터 적용

22 토지분 재산세 저율 분리과세 세율 적용 대상 명확화 [지방세법 제111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저율(0.07%)분리과세대상 토지 ○ 농지(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 기타 분리과세 대상(0.2%)이 농지·임야인 경우 적용하는 세율 불분명	<input type="checkbox"/> 적용 대상 명확화 ○ 개인, 농업법인, 중증 등이 소유한 농지, 목장용지, 보호 및 개발이 제한된 임야로 한정됨을 규정

개정이유

- 분리과세 세율 적용대상 명확화로 납세자 및 과세관청 혼란 방지

적용시기

- '20.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3 『지방세지출 기본원칙』 법제화 [지특법 제2조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지방세 특례 원칙 ○ △공익성, △국가의 경제·사회 정책, △조세의 형평성 등	<input type="checkbox"/> 지방세 특례 원칙 추가 ○ △지자체 사무 적합성, △지역균형 발전 등과의 연계, △ 특례 목적 달성을 위한 대상자·세목 구체성 등 확보, △목적세적 성격 지출 지양, △유사 혜택과의 중복지원 최소화, 조세부담능력 등

개정이유

- 『2019년 지방세지출 기본원칙』상의 지방세지출 정비원칙을 반영하여 지방세 특례 운영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 '20. 1. 1. 이후 지방세 특례 운영에 반영

24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범위 명확화 [지특법 제4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범위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조례로 추가 확대 불가 - 단,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	<input type="checkbox"/> 조례 감면 범위 명확화 ○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 적용 대상자·감면 세목·감면기간의 확대는 조례로 조정 불가 * 경제의 위기, 재난 대응 및 지역 특수성 등의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예외적으로 허용

개정이유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상 혼선 해소

적용시기

- '20. 1. 1. 이후 지방세 특례 운영에 반영

25 임대주택 감면 추정규정 체계정비 (지특법 제31조 및 제31조의3)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추정제외 규정 조문체계 상이 <input type="checkbox"/> (취득세) 시행령 위임 (재산세) 법 규정	<input type="checkbox"/> 조문체계 통일 <input type="checkbox"/> (현행과 같음) - (재산세) 시행령에 위임

□ 개정이유

- 취득세와 재산세의 조문 구성이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어 통일적 규정 마련을 통해 운영상 납세자 혼란 방지 필요

□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6 사업재편승인기업 감면대상 명확화 (지특법 제57조의2 제8항)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사업재편승인기업 감면 <input type="checkbox"/> 등록면허세 50% <input type="checkbox"/> 일몰기한: '21.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대상 명확화 <input type="checkbox"/> (현행과 같음) -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감면요건 명확화 <input type="checkbox"/>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 타 법률 개정('19.8.13. 시행)에 따라 감면요건을 명확화하여 운영상 혼란 방지

□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7 말소차량(건설기계) 복구등록 감면대상 명확화 (지특법 제66조 제2항)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말소차량(건설기계) 복구등록 감면 <input type="checkbox"/> (감면대상) 도난·횡령당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input type="checkbox"/> 등록면허세 100% <input type="checkbox"/> 일몰기한 : 무기한	<input type="checkbox"/> 감면대상 명확화 <input type="checkbox"/> (현행과 같음) -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내용 반영 (건설기계관리법§6조① 8호 → 7호) <input type="checkbox"/> (현행과 같음) <input type="checkbox"/>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도 종전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발생하는 운영상 혼란* 방지

* 舊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1항 제8호는 '건설기계 도난한 경우'였으나 '07. 4. 6. 개정 후 해당 조문 제8호 규정이 '건설기계 폐기한 경우'로 단순 변경

□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8 감면 제외대상(중과세 부동산) 범위 명확화 (지특법 제177조)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감면 제외대상 <input type="checkbox"/>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 ※ 회원제골프장은 최초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중과세 대상에 해당	<input type="checkbox"/> 감면 제외대상 범위 명확화 <input type="checkbox"/>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의 부동산 등 ※ 중과세 여부에 관계없이 별장, 고급 주택, 회원제골프장(승계취득 포함) 등

□ 개정이유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의 부동산 등'으로 개정하여 감면 제외대상 범위 명확화 필요

□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8 무기한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 설정 (지특법 제9조, 제91조)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무기한 감면 ○ 자영업민의 20톤 미만 소형어선, 어업권,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 과세특례 ○ 일몰기한: 무기한	<input type="checkbox"/> 일몰기한 설정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2.12.31.

□ 개정이유

- 감면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해 합리적 조세지출 운영

□ 적용시기

-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Ⅷ. 국세 개정안 반영

1 기한 후 신고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등)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요건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자 ○ <신 설>	<input type="checkbox"/> 기한 후 신고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 ○ <좌 동> ○ <u>법정신고기한 이후</u> <u>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u>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 개정이유

-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자기시정 기회 부여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일 이후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 이 법 시행 전에 기한후신고서 제출하고 이 법 시행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경정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

2 가산세 감면 관련 감면을 조정 및 세분화 (지방세기본법 제57조)

□ 개정개요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1년 이내 : 20% 감면 - 1년~2년 이내 : 10% 감면 	<input type="checkbox"/>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을 조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3개월 이내 : 75% 감면 - 3개월~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1년 이내 : 30% 감면 - 1년~1년6개월 이내 : 20% 감면 - 1년6개월~2년 이내 : 10% 감면
<input type="checkbox"/> 기한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6개월 이내 : 20% 감면 	<input type="checkbox"/> 기한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을 조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1개월~3개월 이내 : 30% 감면 - 3개월~6개월 이내 : 20% 감면

□ 개정이유

- 조속한 자기시정 유도 및 납세자 부담 경감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관허사업제한 요건 엄격화 (지방세징수법 제7조)

□ 개정개요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관허사업제한 요청시 체납액과 해당 사업과의 연관성 미고려	<input type="checkbox"/> 체납액과 해당 사업과의 연관성이 있는 경우만 관허사업제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요건 엄격화

□ 개정이유

- 과도한 납세자 권익 침해 방지

□ 적용시기

- '20. 1. 1. 이후부터 적용

4 압류재산 공매 시 매수제한인 범위 확대(지방세징수법 제77조)

□ 개정개요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압류재산 공매시 매수가 제한되는 자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자 본인 ○ 세무공무원 ○ (신 설) 	<input type="checkbox"/> 압류재산의 공매시 매수가 제한되는 자의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 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경우 그 법인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

□ 개정이유

- 공매제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인 참여 배제

□ 적용시기

- '20. 1. 1. 이후부터 적용

5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등 규정 보완(지방세법 제99조)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와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두가지 가산세 중 큰 금액의 가산세만 적용	<input type="checkbox"/>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보완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와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두가지 가산세를 각각 적용
<input type="checkbox"/> 「소득세법」 상 가산세 준용 ○ 「소득세법」 가산세를 한 조문에 규정(제81조)	<input type="checkbox"/> 가산세 규정 세분화에 따른 보완 ○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된 가산세 규정 반영(제81조, 제81조2~제81조의13)

□ 개정이유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 시, 성실신고 미제출 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중 큰 가산세만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어 개선 필요

□ 적용시기

- '20.1.1.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6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세율 정비 (지방세법 제103조의3)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 별도 규정 ○ 국내주식 : 제103조의3제①항 ○ 해외주식 : 제103조의3제③항	<input type="checkbox"/>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 재분류 ○ 국내주식 : 제103조의3제①항 (좌동) ○ 해외주식 : 제103조의3제①항 (재분류)

□ 개정이유

- 국내·해외주식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순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손익통산 허용

□ 적용시기

- '20.1.1. 부터 적용

7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종과 배제 규정 보완 (지방세법 제103조의3)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종과 ○ (지정지역 외) 1%p 종과 ○ (지정지역 내) 2%p 종과	<input type="checkbox"/>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분은 종과 배제 ○ (지정지역 외) (좌 동) ○ (지정지역 내)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분은 종과대상 배제(1%p 종과 적용)

□ 개정이유

- 투기지역 지정일 이전 토지 양도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뢰이익 보호

□ 적용시기

- '20.1.1. 부터 적용

8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비교과세 합리화 [지방세법 제103조의3]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동일한 과세기간(1년) 중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u>산출세액 비교과세</u>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과 자산호별 산출세액 합계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 적용	<input type="checkbox"/> 동일한 과세기간(1년) 중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u>실제 납부세액 비교과세</u> ○ 감면세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차감한 실제 납부세액으로 비교

개정이유

- 감면세액을 차감한 실제 납부세액이 큰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비교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 '20.1.1. 부터 적용

9 증축의 취득원가를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 시 가산세 부과 [지방세법 제103조의9]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신축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면서 취득원가를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 시 가산세 부과 * 실시취득가액 확인 불가능한 경우 적용 $\text{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 \times \frac{\text{취득시의 기준시가}}{\text{양도시의 기준시가}}$ ○ (신축건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 시 가산세 부과	<input type="checkbox"/> 신축건물 및 증축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면서 취득원가를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 시 가산세 부과 ○ (좌 동) ○ (증축건물) 증축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 시 가산세 부과
	<input type="checkbox"/> 용어정비 ○ “환산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용어 개정

개정이유

- 증축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형평 강화

적용시기

-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문 의			
법 률	부 서	전 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정책과	044-205-3809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정책과	044-205-3817	
지방세법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정책과	044-205-3813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부동산세제과	044-205-3837 044-205-3840 044-205-3833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소비세제과	044-205-3884 044-205-3880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53	